

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상호(기관명)	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		법인등록번호	
	주소			전화번호/팩스번호	
신청범위					
(필요시 별지 사용)				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붙임서류	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.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·인력 및 검사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.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.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등기사항 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